

# 공 고

1. 예정된 처분의 내용 :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해지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근거법령 : 우편법시행규칙 제126조의2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상 및 이용자

①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이용자

사서함	이용자 성명	사서함	이용자 성명
제13호	서*진	제308호	신*영
제354호	이*숙	제396호	이*만
제399호	윤*근		

②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한(실적없음) 이용자

사서함	이용자 성명	사서함	이용자 성명
제5호	강*돈	제12호	윤*상
제34호	강*몽	제36호	남*희
제53호	문*용	제68호	김*호
제85호	김*식	제95호	라*규
제307호	박*갑	제311호	이*룡
제313호	윤*원	제320호	강*규
제323호	제*권	제385호	이*철
제398호	김*	제403호	홍*정
제102호	황*하		

4. 기 간 : 2016. 6. 1 ~ 2016. 6. 14
5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있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내 우리국 영업과(민원실)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연락처: 042-250-7066, Fax: 042-250-7068, 메일: [hshan915@korea.kr](mailto:hshan915@korea.kr))

## 대 전 우 체 국 장